

발신인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03호
다운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황보의 변리사
수신인 : 0440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12길 13, 302호 Kim&Co 특허법률사무
소, 대표 변리사 김용지 귀하

경 고 장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당 소는 디자인등록 제30-1147939-0000호, 제30-1147944-0000호, 제30-1147943-0000호, 제30-1147942-0000호, 제30-1137893-0000호의 권리자인 '워크브레인(주)'의 대리인으로서 본 경고장을 송부합니다.
3. 디자인등록권리자 '워크브레인(주)'는 '애완동물용 화장실' 등 총 5개의 디자인을 등록받았습니다.
디자인의 세부내역은 [첨부자료 01]과 같습니다. (첨부자료 01 : 등록원부 참조).
위 출원사실은 특허청에서 직접 운영·관리 중인 특허정보검색사이트 '키프리스 (www.kipris.or.kr)'에서도 등록번호를 검색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자료02 : 키프리스 검색 결과 참조)
4. 유감스럽게도 귀사가 '워크브레인(주)'가 등록받은 등록디자인을 무단모방하여 온라인 상에서 판매 등 영업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자인 '워크브레인(주)'님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첨부자료 03: 귀사의 디

자인권 침해모습)

5. 본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귀사는 법적으로 '워크브레인(주)'님의 디자인등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가 되며, 침해행위가 계속될 시, 악의적인 침해행위로 분류되어 더 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의한 '침해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115조 및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디자인보호법 제117조에 의한 '신용회복청구권'의 대상이 되어, 민사적인 책임 또한 동시에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본 경고장을 받는 즉시, 귀사와 관련된 모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워크브레인(주)의 등록디자인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시고 디자인 침해 상태를 해소하시어, 이후 더 큰 법적 분쟁 및 추가적인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 드리오니, 하시는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디자인권 침해물품에 대한 판매량 및 재고량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제시하여 주시고 제조품 등을 전부 회수하여 워크브레인(주)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한 후 재발방지에 대하여 약속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침해행위를 즉시, 해소하지 않는 경우 근시일 내에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가능함

을 강조하여 알려드리오니,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상기 요청 사항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022.02.18.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첨부자료 1: 디자인등록원부

첨부자료 2: 키프리스 검색 결과

첨부자료 3: 귀사의 디자인권 침해모습

다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황보의



첨부자료 3: 귀사의 디자인권 침해모습



(출처 : https://scoopers.kr/shop_view/?idx=190)

2011. 11. 19